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5

2019. 12. 16. (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9년 11월 22일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9일

라. 상정일자: 2019년 12월 5일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양개석)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전국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2019. 5.22.)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 및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 휴양소의 관리기관 변경(2019. 3. 1.자 조직개편)으로 휴양소 사용료 징수기준 추가(안 제4조제2항, 별표 5의2)

○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사항 반영

- 직속기관 등의 공동사용을 위한 내용 개정(안 제3조제2항)

○ 현대화시설 확충 및 시설철거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폐쇄 및 철거로 관련내용 삭제 (안 제6조제2항, 별표 6)
- 학생수련원의 현대화시설 확충에 따른 징수기준 마련 및 사용시설 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3)

· 글램핑텐트,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징수기준 추가

· 현 실정에 맞도록 명칭 변경(수련시설, 세미나실 ⇒ 운동장, 연수실)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 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와 이용 대상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임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과 이용 대상자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을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은 수련기관”을 “직속기관 등은 수련·휴양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서관,”을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천학생회관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6, 별표 8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운동장	무료	무료	50,000원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연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 1동 1박 기준
	생활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글램핑텐트	무료	10,000원	15,000원	○ 1동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안전체험관	무료	무료	무료	○제천안전체험관 ○옥천안전체험장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4의2]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보령)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4의3]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 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 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5]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구 분			징 수 액	비 고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	복 사 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 쇄 료 (디지털자료실)	흑 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 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5의2]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비 고
영동 휴양소 쌍곡 휴양소	객실 사용료	4~6인실	20,000원	30,000원	○ 1실 1박 기준금액임
		10인실	30,000원	40,000원	
	시설 사용료		무료	50,000원	○ 1일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1.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2. 기타는 제1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교직원으로 함.

[별표 6]

제천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제천 학생회관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8]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비 고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	객 실 사용료	4 인실	20,000원	30,000원	○ 1실 1박기준 금액임
		10 인실	30,000원	40,000원	
	시설사용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단체)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1.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2. 기타는 제1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충청북도학생수련원과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도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직속기관 등은 수련·휴양시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생 략)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과 같다.	② ----------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 .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생 략)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② ----------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별표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수련시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관도	4~6인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10인실	1,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 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 1동 1박 기준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운동장	무료	무료	50,000원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삭 제 >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연수실	무료	무료	50,000원	
	개인텐트설치	무료	무료	10,000원	○ 1동 1박 기준
	생활실	1,000원	20,000원	3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글램핑텐트	무료	10,000원	15,000원	○ 1동 1박 기준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지도자) 무료
	안전체험관	무료	무료	무료	○ 제천안전체험관 ○ 옥천안전체험장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4의2]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사용료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4의2]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사용료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해양교육원(보령)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수련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5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강당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4의3]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 사용료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제주)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본 표 중 학생.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별표 4의3]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 사용료징수금액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	생활관		1,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기준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과 기타는 1실 1박 기준 ○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적용금액 ○ 체험활동 인솔교사는 무료
	교직원 콘도	4~6인실	-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10인실	-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다목적실		무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세미나실		무료	무료	50,000원	

1. 학생의 범위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신청하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이 허가한 현장체험 학

	습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함. 2.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3.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제1호에 준함. 4. 기타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별표 5]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미원도서관 중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복사료 A4-B5 30원 〃 인쇄료(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인쇄료(디지털자료실) 흑백 A4-B5 50원 〃 인쇄료(디지털자료실)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5] 직속기관 분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복사료 A4-B5 30원 〃 인쇄료(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1매당 인쇄료(디지털자료실) 흑백 A4-B5 50원 〃 인쇄료(디지털자료실)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신 설>	[별표 5의2]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영동휴양소 객실사용료 4~6인실 20,000원 30,000원 ○ 1실 1박 기준금액임 영동휴양소 객실사용료 10인실 30,000원 40,000원 쌍곡휴양소 시설사용료 무료 50,000원 ○ 1일기준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1.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2. 기타는 제1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교직원으로 함.

[별표 6]

제천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6]

제천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제천학생회관	< 삭 제 >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8]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고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객실사용료	4인실	20,000원	30,000원	○ 1실 1박기준 금액임 ○ 1일은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를 기준으로 함
		10인실	30,000원	40,000원	
	시설사용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단체)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하단 신설>

[별표 8]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기타	비고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객실사용료	4인실	20,000원	30,000원	○ 1실 1박기준 금액임 ○ < 삭 제 >
		10인실	30,000원	40,000원	
	시설사용료		무료	50,000원	○ 1일 기준(단체)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1.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함.
2. 기타는 제1호 이외의 사용대상과 퇴직 교직원으로 함.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 · 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 ·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 · 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 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18. 2. 9.>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8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

제53조(휴양소) 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소를 둔다.

② 휴양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9.2.8>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48조 관련)

명 칭	위 치
보은교육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옥천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영동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진천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괴산교육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증평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음성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금왕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단양교육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별표 12] <개정 2019.2.8>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제53조 관련)

명 칭	위 치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